



2023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

- 집중신청기간 3.2.(목) ~ 3.17.(금),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-

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사업을 운영하오니,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(www.bokjiro.go.kr 또는 onelink.moe.go.kr)으로 신청 바랍니다.

■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

구 분		내 용	
지원 대상	교육 급여	■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월 “소득인정액”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학생(4인 가구 기준 월 270만원)	
	교육비	■ 기초생활(교육급여)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 차상위대상자, 가구의 “소득인정액”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	
기 간		2023년 3월 2일(목) ~ 3월 17일(금) *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	
신청 방법 (택1)		① 방문신청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	
		② 온라인 신청 ■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) ■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(http://onelink.moe.go.kr)	
제출 서류		■ 신청서, 소득재산신고서,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, 각종 증빙자료	

※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, 교육비는 사도 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도교육청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.

■ 지원내용

구분	초등학생	중학생	고등학생
교육급여	- 교육활동지원비 415,000원	- 교육활동지원비 589,000원	- 교육활동지원비 654,000원 - 교과서대, 입학금, 수업료 (무상교육 제외 고교)
교육비	방과후자유수강권, 교육정보화(PC, 인터넷통신비), 고교학비(무상교육 제외 고교), 급식비 등		

■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

-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: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.
- 중·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: '22년도에 교육급여·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초·중학생이 '23년도 중·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집중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.
- 교육비 납부유예 : 법정자격 대상자(기초,한부모,차상위)의 납부유예를 원하시는 경우 행정실(☎ 472-7707)로 문의 바랍니다.

■ 문의 : 에듀콜센터 1544-9654, (교무실) 063-472-7703

2022. 12. 16.

군 산 초 등 학 교 장